

「구미시 모자·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 
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8월 27일

나. 발 의 자: 김영태, 김영길, 박세채, 신용하, 안주찬,  
이상호, 추은희 의원(7인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9월 5일

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영 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별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, 기존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전면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조례명에 관한 사항 정비
- 첫만남이용권, 출산축하금 관련 조항 삭제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의2, 제11조
  -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출산축하금,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(「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)가 상정됨에 따라, 조례명의 변경과 관련 조문의 삭제를 위해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2024년 7월 부서개편으로 첫만남이용권, 출산축하금 등 관련 사무가 구미보건소에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률상 문제는 없음.

- 다만, 조례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집행부서에서는  
난임 극복 지원사업, 출산 지원사업 등 가족의 보건 증진을  
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출생 장려를 위한 부서  
간 사업 연계에 대한 구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     략

5. 토    론    요    지: 생     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     음

7. 심    사    결    과: 원안가결